

의안번호	
의 퇴 인	정을호 의원
회 답 일	2024.12.18.
추 계 번 호	24C57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제1항)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 <u>해산</u>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9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재량규정
2	안 제43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하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요청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와 운영상황 등을 포함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첨부된 해산인가신청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반환한다.	의무규정
		(제5항) 제4항에 따른 반환재산 외의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제2항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 2.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연 3.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과 임직원 보호를 위하여 재원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하여 편입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	재량규정

		(제6항)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 제5항에 따른 편입·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	--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안 제43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특례) 안 제54조(벌칙)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임
 - 2023.12.31.기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06개소(전체 어린이집의 4.16%)이며, 56,812명의 아동(현원, 전체 어린이집의 5.61%)이 재원¹⁾
-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및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였던 기본재산에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가액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함²⁾

1) 「2023 보육통계」(교육부) 참조

- 개정안은 해산되는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에 대한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소요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해산하게 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유한 잔여재산 규모 및 잔여재산 중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일정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 등에 즉시 반환한 후,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재원 영유아 교직원에 대하여 편입 및 퇴직 위로금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³⁾와 동 법 시행령은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면서 귀속된 재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복지법인 해산시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가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인가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을 잔여재산의 규모 및 잔여재산 중 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에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가액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안 제6조에 따라 어린이집 ‘해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수당 등 비용 증가는 기관의 기본경비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